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15호

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여행업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제목: 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공고내용	보증보험 미가입(2차 위반) 관광사업(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예정된 처분	사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3. 공고대상: 관내 여행업체 4개소 (공고문 2페이지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7. (15일간)

5.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6. 의견제출 안내

가. 위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 전화번호 02)330-1649, 팩스 02)330-1430, E-mail bkmin1235@sdm.go.kr

7. 기타안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대상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미가입(2차 위반) 여행업체)

업종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송달 불가사유
종합 여행업	주식회사 피오디투어	신O성 (198*.4.2*)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57-41, 501호 (남가좌동)	이사불명
종합 여행업	리치인터내셔널투어 주식회사	윤O자 (196*.1*.2*)	서대문구 연희로 186, 201호 (연희동)	수취인 불명
종합 여행업	(주)굿필링코리아	정O라 (198*.5.2*)	서대문구 증가로 17, 엘리트빌딩 2층 201호 (연희동)	기타
국내외 여행업	(주)월드에이스	김O철 (197*.8.3*)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 SK글로벌하우스 B2 (신촌동)	이사불명